

건강한 국민, 신뢰받는 병원, 미래를 선도하는 협회가 함께 합니다.



사 단  
법 인

# 대한병원협회



SMART 2030

수 신 정신병원장,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된 병원급 의료기관장  
참 조  
제 목 「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·퇴원 절차 안내」 개정 의견 조회

---

1. 관련 근거 : 국립정신건강센터 입원제도과-1386(2024.5.2.)
2.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\* 및 시행에 따라 「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·퇴원 절차 안내」를 개정할 예정입니다.  
\* 정신질환자 입원등의 권리고지 작성·안내(제6조제1항), 입원환자의 입원심사소위원회 의견진술 기회부여(제47조제2항) 등 ('24.1.2. 개정, '24.7.3. 시행)
3. 이에, <붙임 1>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·퇴원 절차를 안내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<붙임 2> 양식을 작성하여 **2024. 5. 10. (금)까지 본회 정책국(E-mail: [law@kha.or.kr](mailto:law@kha.or.kr), Fax: 02-705-9219)으로 제출 바랍니다.**

- 붙임 1. 「2022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·퇴원 절차 안내」 1부.  
2. 「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입·퇴원 절차 안내」 개정의견 작성 양식 1부.

붙임 자료는 협회 홈페이지 - 협회업무 - 정책국 메뉴에서 다운로드 바랍니다. 끝.

대한병원협회장



사원 김승민 팀장 최명희 국장 장은혜

시행: 정책국 제2024-152(2024.5.8.)

(04165)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15(마포동 35-1) 현대빌딩13~15층 / [www.kha.or.kr](http://www.kha.or.kr)

전화 02-705-9296 전송 02-705-9219 (대표FAX: 02-705-9209) E-mail: [ksm@kha.or.kr](mailto:ksm@kha.or.kr)